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54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주요 업무는 능률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상담으로, 조사 및 상담분야에서 상당기간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신속한 對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개소 시부터 민간위탁사무로 지속하여 추진해 왔음.
- 나.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소비자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간 운영주체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위탁하고자 함.
- 다. 최초 위탁 시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회 '동의'규정 신설 전으로, 그 동안 한 번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이기에 동 조례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에 따라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금번 재위탁 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사무형)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현황

- 개 소 : 2004.9.1. / 위 치 : 서소문별관 1동 14층
- ※ 홈페이지 : <https://ecc.seoul.go.kr>
- 수탁기관 : (사)한국소비자연맹(대표 : 강정화)
- 인 원 : 센터장 포함 7명
- 주요사업
 - 연2회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 및 DB 정비
 - 소비자이용 상위 100개 인터넷쇼핑몰평가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기사이트 적발,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등 시장감시 활동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9조 및 제20조

○ 추진경위

- '04.02. : 전자상거래지원협의회 구성(운영방법 및 사업추진 방향 결정)
- '04.04. : 전자상거래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소비자보호과-2652호)
- '04.04.~05.: 전자상거래센터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04.05.~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대부분의 재화·용역이 거래되는 전자상거래 업무를 추진하는 전자상거래센터의 소비자상담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관련 다양한 전문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 서울시 소재 13만 여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단순·반복의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현저히 요구됨.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증가,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운영 함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건비 등 예산 절감 및 對 시민 서비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다. 위탁사무내용

-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설·장비의 관리
- 전자상거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 및 업체 DB 구축
- 신고·미신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활용
-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수집된 개인정보 관리
- 인터넷쇼핑몰 평가,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기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라. 민간위탁기간 : 3년(2019.1.1.~2021.12.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608백만원('19년 예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9조(전자상거래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전자상거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최은희 (☎ 2133-5372)

별첨**예산 세부내역(위탁 시작연도)**

□ '19년 위탁금 : 608백만원(12개월, '19.1월~12월)

(단위 : 천원)

| 계 | 인건비 | 사업비 | 운영비 |
|---------|---------|---------|--------|
| 608,272 | 225,652 | 314,104 | 68,516 |

□ 산출내역(안)

| 구분 | 산출금액(천원) |
|-------------------------|----------------|
| 계 | 608,272 |
| 인 건 비 | 225,652 |
| 7명(센터장 및 사업담당) 기본급 | 194,964 |
| 퇴직충당금 및 제수당 | 30,688 |
| 사 업 비 | 314,104 |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연2회) | 소계 175,704 |
| ▶모니터 활동비 | 173,204 |
| ▶모니터단 운영비 | 2,500 |
|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만족도 평가 | 26,400 |
|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전산개발) | 102,000 |
| 전자상거래센터 홍보활동비 | 10,000 |
| 운 영 비 | 68,516 |
|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 18,620 |
|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관리 | 39,934 |
| 소모품비 등 일반관리비 | 9,962 |